의안번호	2200818
의 뢰 인	김선교의원
회 답 일	2024. 7. 3.
추계번호	24D1223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1조제2항제4호(휴직)	육아휴직의 대상자녀의 연령을 현행 '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'에서 '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'로 확대	의무규정

Ⅱ. 미첨부 근거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71조제2항제4호(휴직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Ⅲ. 미첨부 사유

❑ 개정안은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을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려는 것임

❑ 현행법 제72조제7호[1]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명당 3년 이내이고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은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1조의3[2]제1항에

---

1)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2조(휴직 기간)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.
7.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.

2)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1조의3(육아휴직수당) ①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,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.
1.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
가.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: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. 이 경우 그 상한액은 1개월째는 200만원, 2개월째는 250만원, 3개월째는 300만원, 4개월째는 350만원, 5개월째는 400만원, 6개월째는 450만원으로 한다.
나.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: 제1항에 따른 금액

따라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월 봉급액의 80%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하한액이 70만원, 상한액이 150만원이며,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임

○ 다만,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또는 「한부모지원법」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상한금액을 상향 규정하고 있음

❑ 개정안은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또는 지급기간은 현행과 같이 하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대하는 것으로, 법률 개정 이후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대체인력 채용 등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○ 2022년 기준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행정부 국가공무원 육아휴직자 수는 총 14,181명으로, 이 중 여성공무원이 54%인 7,657명, 남성공무원이 46%인 6,524명임[3)]

❑ 다만, 현시점에서는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육아휴직자 수 및 월봉급액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어려움

---

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
가.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: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.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.
나.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: 제1항에 따른 금액

③~⑤ (생 략)

⑥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3) 2022년 국가공무원 인사통계, 인사혁신처, 2023.5.

국회예산정책처	행정비용추계과
과장	김안나
추계세제분석관	한예슬
연락처	02-6788-4831
	yeseulhan@nabo.go.kr